

September 26, 2016

포인트 등 결제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A그룹의 계열사로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들(A쇼핑 주식회사 외 1인)은 고객이 원고들을 포함한 A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이하 “1차 거래”)하면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이하 “A포인트”), 그 후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이하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이하 “증정 상품권”)하고, 고객이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하였습니다.

A포인트가 사용되면 원고들과 A그룹 다른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A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2차 거래에서 A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하 “쟁점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납대문세무서장 외 91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1심 및 2심 법원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A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A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즉,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2차 거래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과 A그룹 다른 계열사들이 A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어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정산금 약정을 이유로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증정 상품권에 대해서도 A포인트와 동일하게 판단함).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에 관한 쟁점금액 부분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 의의 및 시사점

기업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신고·납부해왔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 등 세무처리 및 거래현실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이 사건과 유사한 소송 또는 경정청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고, 과세관청은 내부적으로 경정청구 및 소송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기업으로서는, 우선 경정청구 기한(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1항)이 임박한 과세기간 귀속분부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황태상 변호사	TEL. 02 316 1770	E-Mail. tshwang@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하병만 전문위원	TEL. 02 316 1689	E-Mail. bmha@shinkim.com
